24. 12. 16. 오후 2:14 인쇄

## 입영판정검사 신청

## 입영판정검사 신청

입영판정검사 대상 부대로 입영하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 사람\*이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입영판 정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)

\* 입영판정검사 제외대상 : 병역판정검사, 재병역판정검사, 현역병지원신체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

신청시기: 입영판정검사 희망일 3일 전까지

구비서류: 병역이행일 신청(희망시기변경·취소 신청)서 <u>바로가기</u>

신청기관: 지방병무청(지청) 또는 병무청 누리집 바로가기

## <u>☞ 자세한 신청방법은 지방병무청에 문의</u>

입영판정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입영일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검사를 받습니다.

입영판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사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입영판정검사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바로가기

입영판정검사원을 제출한 사람이 정해진 검사일자에 오지 않은 경우, 입영판정검사 신청서 제출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합니다.